

##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3월 25일

### 대전광역시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사업대상 :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 신청기간 : 2022년 4월~12월까지 / 상시 접수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 주요내용
  - 용자한도 : 7천만원 이내\*(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2022년 4월 1일 이후 신규 선정자부터 용자한도 적용 (기존 선정자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총 대출금리 3.0% (대전시 이자지원 2.3% / 본인부담 0.7%)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용자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이전 사업 선정 이후 전액 상환한 자는 신규 신청 불가

<\*기한 연장 요건>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2. 자격요건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 단,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①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
- ②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③ 미혼 청년

※ 부모 이혼·실종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2) 취·창업자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①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②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③ 미혼 청년

※ 프리랜서,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3) 청년부부 :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세한 제출 서류 및 요건은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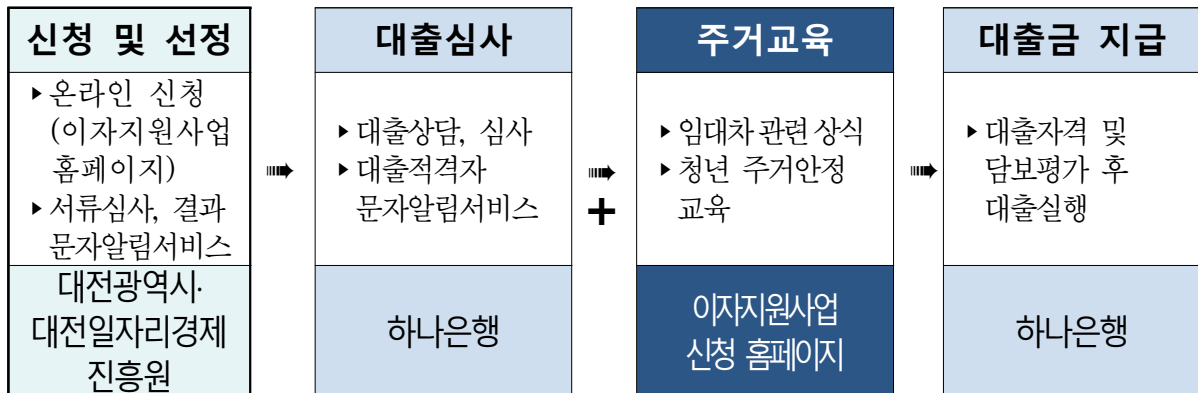
\* 전월세 전환율 7.3% 적용예시

$$\text{계산식 : 전월세전환율} = \frac{\text{월세} \times 12\text{개월}}{(\text{1억5천만원} - \text{월세보증금})}$$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1억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월세	0원	30만원	60만원	73만원	85만원

\*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전월세전환율 계산기'검색하여 계산 가능

## 3. 신청 및 대출절차 /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 신청 단계에는 임대차계약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으므로 은행의 대출 심사를 먼저 받은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 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추천 (이 사항은 의무가 아니며 추천 사항이므로 신청자의 판단 요망)

※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4.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기간 :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 매일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

온라인 신청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 (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 가능 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을 확인 후 제출 바람

### □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 확인 후 제출 요망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첨부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2021년도 귀속분 제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초까지) 전전년도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고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 <u>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u>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u>발급대상자 : 본인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u>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조회조건 : 가입자 전체 이력 출력본 필요

### <신청자 자격요건별 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고	
추가 서류	대학 (원)생, 취업 준비생	재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가능</li> <li>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li> </ul>
		사실증명원 (2021년 귀속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li> <li>※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li> </ul>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2021년귀속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 모두 제출</li> <li>부모의 이혼·사별 등 사유로 부모 중 한분만 계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소득증빙자료 추가제출</li> <li>* 자세한 사항은 FAQ 확인</li> </ul>
	취· 창업자	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li> </ul>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li> </ul>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021년 귀속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1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b>직장에서 발급</b>하는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3개월분) ③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로 대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li> <li>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b>※ 소득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 참고하세요</b></li> </ul>
	청년 부부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li> </ul>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li> </ul>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021년 귀속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부 모두 제출</li> <li>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li> <li>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1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b>직장에서 발급</b>하는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3개월분) ③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로 대체 가능</li> <li>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li> <li>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b>※ 소득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 참고하세요</b></li> </ul>
	※ 대출보증 및 대출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대출 업무 관련 문의 사항은 하나은행(6개 지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 가능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매월 신청일(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내외 선정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선정

○ 선정결과 알림 : 개별통보(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위의 선정결과 알림 사항은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상당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차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불가

○ 단,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에 포기신청

참고사항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대출 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 타 은행 송금수수료 등)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선정취소

○ 아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용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li><li>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li><li>③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li><li>④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li></ul> |
|--|

## 5. 선정자에 대한 확인사항(분기별)

확인내용 : 주소지(임차지) 실 거주여부 / 주택소유여부 /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 조치 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자격요건 위반자 통지 후 위반기간 이자 미 지원 및 지원종료</li><li>② 기 지급 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li><li>③ 자격요건 위반사항 발생 즉시 대전시에 통보 후, 은행을 통해 대출금 전체 상환 필요</li></ul> |
|---|

## 6. 이자지원 중단 및 연장

### □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li> <li>②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li> <li>③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li> <li>④ 임대차계약 종료 (목적물변경 제외)</li> </ul>	<p>※ 연장 신청 시 공고문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본인 및 배우자 나이 만39세 초과(대출기한)</li> <li>② 소득 요건 초과</li> <li>③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li> <li>④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li> <li>⑤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li> <li>⑥ 대출 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사유 해당 등</li> </ul>

-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확인(임차지 거주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 후,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 기간 이자 미 지원 및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이자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점 이후 지원된 이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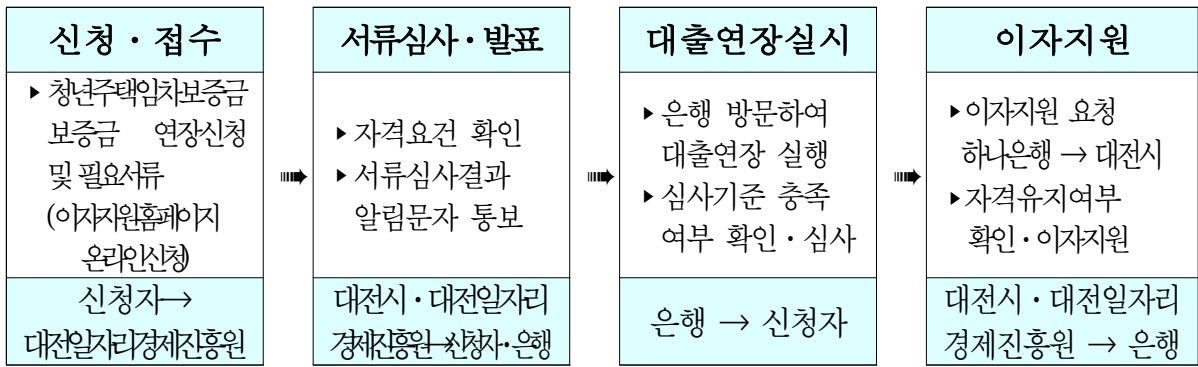
### □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 연장신청 : 전·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한 달 전부터 연장 신청서 및 본 지원사업 연장 시점의 공고문 필요서류 제출
  - ※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djhousing.djbea.or.kr>)에 연장신청 및 서류 제출
- 연장조건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
  - ①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음
  - ②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③ 나이, 소득요건 등 연장시점 공고문의 자격요건 유지
  -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대출심사 기준 충족
  - ⑤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

○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만료일에 급박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기한 내 대출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최소 3주 전에는 연장 신청 추천

○ 절차



## 6. 기타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용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FAQ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면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선정 문의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 042-380-3032, 3033, 3035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2 대전광역시콜센터 ☎ 042-120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점 ☎ 621-1111, 갈마동지점 ☎ 522-1111, 오정동지점 ☎ 632-1111, 유성구청지점 ☎ 863-1111, 대흥동지점 ☎ 253-1111, 가오동지점 ☎ 721-1111)

※ 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